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0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 윤준병ㆍ허 영ㆍ박용갑

장철민 · 김태선 · 정동영

송옥주 · 서영교 · 주철현

김윤덕 • 박민규 • 이원택

강준현 · 허종식 · 박희승

박홍배 • 민병덕 • 이춘석

김우영 · 신영대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를 "자율주택정비사업에"로 한 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u>다</u>		
<u><단서 신설></u>	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		
	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		
	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u>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u>	② <u>자율주택정비사업에</u>		
<u>비사업에</u> 관하여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			
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